2022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영재	940811-*****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벼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0	0	0	0
02월	0	0	0	0
03월	0	0	0	0
04월	0	0	0	0
05월	0	0	0	0
06월	0	0	0	0
07월	0	0	0	0
08월	0	0	0	0
09월	0	0	0	0
10월	80,380	9,860	0	0
11월	80,380	9,860	0	0
12월	80,380	9,86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241,140	29,580	0	0
총합계				270,72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영재	940811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0	0
09월	0	0
10월	103,500	0
11월	103,500	0
12월	103,5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료 납부금액	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310,500	0
	총합계	310,5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영재	94081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7-05-15*	청****	일반	8,600
7-02-62*	건****	일반	94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03,2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03,2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영재	94081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182,350	37,900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
0	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2년 합계	0	0	37,900	0	37,900
1월~6월	0	0	0	0	0
7월~12월	0	0	37,900	0	37,9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22,85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15,050
인별합	계금액			37,9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30201-1175948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4-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영재	94081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4,144,803	5,461,849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39,000	0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2년 합계	2,809,356	0	96,600	0	2,905,956
1월~6월	0	0	0	0	0
7월~12월	2,809,356	0	96,600	0	2,905,95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1,999,856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71,50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212,3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30201-1175948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5-

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영재	940811-*****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23,70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0
직불카드 등	462-86-01671	토스뱅크 주식회사	일반	597,200
직불카드 등	462-86-01671	토스뱅크 주식회사	대중교통	1,400
인	별합계금액			2,905,956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영재	940811-*****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1,289	4,000	

■ 전통시장 분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	2022년 사용금액 합계	
0	0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2년 합계	0	0	0	4,000	4,000
1월~6월	0	0	0	0	0
7월~12월	0	0	0	4,000	4,0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30201-1175948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7-

2022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2년 09,10,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영재	940811-*****	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8	조리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0
		0	0	0	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 거래	0	0	0	0	4,000
		0	4,00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